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31조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1) 및 (2)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각각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종합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일반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을 “기타테마파크업 : 테마파크시설을”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한다.

제5조제2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을 “(허가대상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을 “(테마파크

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합 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반유원 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1조의2의 제목 “(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대한 사고)”를 “(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유원시설업자”를 각각 “테마파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를 “테마파크시설이”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시설 또는 기구”를 “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원시설업자”를 “테마파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자는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을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으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3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1) 및 같은 목 (2)(나)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각각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2) 위반사항란 2)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2) 위반사항란 가)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2)나) 위반사항란 나)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2)다) 위반사항란 다)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호 커목 위반사항란 커목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고, 같은 호 터목1) 위반사항란 1)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호 퍼목2) 위반사항란 2) 중 “유기시설 · 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표 3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종합 여행 업	국내 외여 행업	국내 여행 업	관광호텔업						수상 관광 호텔 업	가족 호텔 업	한국 전통 호텔 업	호스 텔업	소형 호텔 업	의료 관광 호텔 업	휴양 콘도 미니 엄업	전문 휴양 업	종합 휴양 업
					5성급 · 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별표 3 제2호나목2) 위반행위란 2)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3) 위반행위란 3)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

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4) 위반행위란 4)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위반행위란 제13호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가. 위반행위란 가목 중 “따른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따른테마파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나. 위반행위란 나목 중 “유기사설 · 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 또는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마목 중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파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1조제3호라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83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이하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하는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의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⑦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나목 중 “시설 또는 기구”를 “시설”로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다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⑪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⑫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5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⑮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⑯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차목 중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⑲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파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⑳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항제6호, 제27조의4제5항제5호 및 제116조의25제1항제2호가목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2호나목 및 제116조의36제1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각각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130조제5항제14호 중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㉒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표 매입대상란 제6호나목1)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로 하

고, 같은 표 매입대상란 제1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㉓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바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3호나목 중 “유원시설업”을 각각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97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8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㉖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종류란 제21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종류란 제22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종류란 제23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종류란 제24호 중 “일반유원시설업”을 “일반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종류란 제25호 중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과 중

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㉓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의 사용형태란 중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㉔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하며, 같은 호 “기타유원시설업”을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㉕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종합휴양업	나. -----
(1) 제1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u>종합유원시설</u> 의 시설을 갖추어	(1) ----- ----- ----- ----- ----- ----- ----- ----- ----- ----- ----- -- <u>종합테마파크업</u> -----

관광객에게 이용하
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
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
휴양시설 중 두 종
류 이상의 시설 또
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
설 및 종합유원시설
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 사. (생략)

4. (생략)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가. 종합유원시설업 : 유기시
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3조

(2) -----

---- 종합테마파크
업-----

다. ~ 사.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테마파크업-----
--

가. 종합테마파크업 : 테마파
크시설을 -----

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설치하
여 운영하는 업

나. 일반유원시설업 : 유기시
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
른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
시설 또는 유기기구 한 종
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
하는 업

다. 기타유원시설업 : 유기시
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법 제33조에 따
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
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
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6. (생략)

② (생략)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
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
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테마파크시설 -----

나. 일반테마파크업 : 테마파
크시설을 -----

----- 테마
파크시설 -----

다. 기타테마파크업 : 테마파
크시설을 -----

- 테마파크시설을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등록기준) -----

-----.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생략)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생략)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생략)

제7조(허가대상 유원시설업)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 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한다.

제31조(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

-----.

1. (현행과 같음)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테마파크업

3. (현행과 같음)

제7조(허가대상 테마파크업) ---

----- 테마파크업”이란 종합테마파크업 및 일반테마파크업---
-----.

제31조(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

허가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이란 조건부 영업허
가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종합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

우: 5년 이내

2.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려는 경

우: 3년 이내

② (생략)

제31조의2(유기시설 등에 의한 중
대한 사고) ① 법 제33조의2제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 4. (생략)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되어
인명 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 제33조의
2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
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기간 등) ① -----

-----.

1. 종합테마파크업-----

2. 일반테마파크업-----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테마파크시설-----

② 테마파크업자-----

-----.

유원시설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유원시설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테마파크업자

③

테마파크업자

④ (현행과 같음)

⑤

테마파크시설이

1. 사용중지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용자 등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선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결함은 있으나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개선 조치를 통하여 안전 운행이 가능한 경우

3. 철거 명령: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구조 및 장치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비·수리 등이 곤란하여 안전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유원시설업자는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 명령을 받은 유원시설업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개선을 완료한 후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

1. ----- 테마파크시설
을 -----

2. ----- 테마파크시설-----

----- 시설-----

3. ----- 테마파크시설-----

⑥ 테마파크업자-----

-----.

⑦ (현행과 같음)

⑧ -----
----- 테마파크업자
는 테마파크시설-----

----- 테마파크시설의 --

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 또는 기구의 운행 적합 여부를 검사받아 그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법 제34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편의시설 중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종류 및 유원시설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 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

----- 시설의 -----

-----.

제31조의3(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

-- 테마파크시설-----
-- 테마파크업-----

-----.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

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1. ~ 2. (생략)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에 관한 권한 :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3의2. ~ 8. (생략)

② ~ ⑦ (생략)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테마파크시설-----

3의2. ~ 8.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 5의2. (생략)
- 5의3. 법 제31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등에 관한 사무
- 6.·7. (생략)
- ② ~ ⑥ (생략)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 테마파크업-----

3. ~ 5의2. (현행과 같음)
- 5의3. ----- 테마파크
크업-----

6. · 7.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866